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03
----------	-------

발의연월일 : 2014. 12. 31.

발 의 자 : 장윤석 · 김동완 · 이강후
김을동 · 박민식 · 박성호
박맹우 · 김종훈 · 이완영
김희선 · 이인제 · 김광림
의원(12인)

제안이유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인사청문 과정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이원화 함. 또한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및 관계인의 출석·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은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함.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 시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도덕성심사소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도덕성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에 대하여 관계인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라. 인사청문 제도 전체 기간과 인사청문회기간을 각각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제4조의2에 따른 도덕성심사소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덕성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최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

② 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덕성
심사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도덕성심사소위원회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
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⑤ 도덕성심사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제57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5일”로, “3일”을 “4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도덕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인사청문 요청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의결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에 대하여 관계인이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자료의 제출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로 본다.

제18조의2(위원의 징계) 국회는 위원회 위원이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4조·제4조의2·제12조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임명
동의안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생략)</p> <p>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 및 제4조의2에 따른 <u>도덕성심사소위원회</u>-----</p> <p>-----</p> <p>-----</p> <p><u>제4조의2(도덕성심사소위원회) ①</u></p> <p><u>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최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u></p> <p><u>② 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u></p> <p><u>③ 도덕성심사소위원회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④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u></p>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생략)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④ (생략)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⑤ 도덕성심사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제57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30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25일-----
-----4일-----
-----.

②·③ (생략)

<신설>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도덕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인사청문 요청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의결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에 대하여 관계인이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자료의 제출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로 본다.

제18조의2(위원의 징계) 국회는 위원회 위원이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

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